

『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10월 27일

##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##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-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기준을 마련하여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장례지원 대상자를 소방공무원, 의용소방대원으로 정함(안 제2조)  
인천광역시장(葬), 소방서장(葬), 가족장(葬)으로 구분하고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장례식의 종류를 규정함.  
(안 제4조)

-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 하에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.

(안 제6조, 제7조)

- 장례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.

(안 제9조)

### 3. 자치법규안 : 별첨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 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| 제출자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조항 | 찬반여부 및 사유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|
| ○주 소 :<br>○성 명 :<br>○연락처 : |       |           |    |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##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례의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2, 제16조의 3과 제17조의 소방활동, 소방지원활동,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거나 소방교육·훈련 중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1. 「소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
2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용소방대원

제3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장례식의 종류 및 결정)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인천광역시장(葬)
2. 소방관서장(葬)
3. 가족장(葬)

②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결정한다.

③ 소방관서장(葬)은 장례식을 주관하는 소방관서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 있다.

제5조(장례식의 주관자) 인천광역시장(葬)은 시장이, 소방관서장(葬)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. 다만,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(葬)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장례위원회)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위원장이 되고,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
2. 장례식의 방법·일시 및 장소
3. 장례비용 지원범위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
4.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

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집행위원회) ① 장례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집행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(葬)의 경우 소방본부장이 되고, 소방관서장(葬)의 경우 소방관서의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,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

2. 발인제, 영결식,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
3.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,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
4.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
-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8조(수당과 여비)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장례비용) 시장은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.

1. 조문객의 식사 비용
2. 노제 비용
3. 삼우제 비용
4. 사십구일제 비용
5.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
6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기타 비용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